

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단속개시에 따른 행정예고

구리시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신규설치한 고정형 CCTV 단속개시를 실시함에 있어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~4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주민은 2024. 07. 25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7. 5.

구 리 시 장



1. 취 지

구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·정차 단속을 위하여 신규 설치한 불법 주·정차 단속용 CCTV 단속개시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, 제33조, 제34조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~4

3. 행정예고(공고) 방법 : 구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uri.go.kr>)게시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4. 07. 06. ~ 07. 25.(20일간)

5.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실시 구간

| 연번 | CCTV 단속위치 | | CCTV 단속 시간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| 주소 | 위치 | | |
| 1 | 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10 | 교문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| 평일 07:00~21:00, 토요일 07:00~18:00, 일·공휴일 운휴 ※ 점심시간 12:00~14:00 단속유예 | 신규 설치 |

- 사전예고 : 2024. 07. 06. ~ 07. 25. (20일간)
- 단속시작 : 2024. 07. 26.(금)부터
- 단속방법 :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
- 단속시간 : 평일 07:00 ~ 21:00, 토요일 07:00~18:00, 일·공휴일 운휴
※ 점심시간 12:00 ~ 14:00 단속유예

6. 의견제출

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구리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(방문, 우편 또는 팩스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등
- 다. 제출처 :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(구리시 아차산로 439)
- 라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31-550-2098)
- 마. 제출양식 : 의견 제출서(붙임)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(031-550-27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위치 및 의견 제출서 서식 각 1부

불법주정차 CCTV 단속 예정지

- 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위치도 -

| 설치 위치도 | 단속 방향 사진 |
|--|--|
|  |  |
| 주소 | 현장 사진 |
| <p>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10 교문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</p> |  |

의견제출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건명 |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단속개시 행정예고 | | |
| 의견제출자 | 성명 (개인/단체) | | 생년월일 |
| | 주소 | | 전화번호 |
| 제출의견 | | | |
|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| | | |
| 2024년 월 일 | | | |
| 제출자 | | (서명 또는 인) | |
| 구리시장 귀하 | | | |